

#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안내

2024. 2.



[ 학생 생활 과 ]

# 목 차

I. 추진 배경 및 근거 .....	1
II. 추진 방침 .....	1
III. 추진 방향 .....	2
IV. 세부 운영기준	
1. 학생 봉사활동 기본 소양 교육 강화 .....	2
2. 단위 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.....	3
3. 봉사활동 인정 기준 .....	5
4. 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 .....	7
5. 봉사활동 지원 체계 구축 .....	10

# I. 추진 배경 및 근거

## 1 추진 배경

-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영역 정착 및 안정화
  -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나눔과 배려의 정신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안내와 지원체제 강화
- 2022 개정 교육과정 단계별 적용에 따른 초등 1-2학년 봉사활동 관련 내용 안내
- 「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」(2023~2027, 행정안전부)

## 2 추진 근거

- 2024학년도 초·중·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9조
- 「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」(교육부, 2021~2025)
- 2023학년도 초·중·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
  - ※ 추후 교육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자료 제공 시 그에 따른 봉사활동 기재 지침에 근거함
- 2024 경북교육 4-1-3 「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 조성」

# II. 추진 방침

- 실천위주의 나눔과 배려를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
- 학생봉사활동 실적 관리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
-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활용한 지속적 봉사활동 실시
-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근거한 자발적 실천 강조
  - 무보수성, 자발성, 공익성, 비영리성, 비정파성(非政派性), 비종파성(非宗派性)
- 교육공동체를 연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강화

### Ⅲ. 추진 방향

**목 표**

나눔과 배려의 실천 및 공동체 의식 함양



**실 행**

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봉사활동 운영



#### 추진 방향

- 자기 주도적 학생봉사활동 실천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 강화
  -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활용한 지속적 봉사활동 지향
-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일관성 있는 학생봉사활동 운영 방향 제시
  -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절차, 기본 인정 기준 및 내용별 인정(예시) 안내
- 봉사활동의 편성·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조
  - 단위 학교별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·운영
-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절차 강조
  -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
- 학교 및 학생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
  - 지역협의체 협력 체제 구축 및 봉사 프로그램 발굴·보급

### Ⅳ. 세부 운영 기준

**1**

#### 학생 봉사활동 기본 소양 교육 강화

- 학생 대상 봉사활동 소양 교육 실시
    - 봉사활동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실시
      - 학기 초 및 방학 직전 등 연중 수시로 교육 실시
- (※ 봉사활동 소양 교육은 학기 당 1시간, 연간 2시간 이내 실적 인정)

-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활용한 지속적인 봉사활동 지향
  - 학생의 적성 및 진로 등을 고려한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의 실천 강조
  - ※ 시간 확보를 위한 단순 봉사활동 및 일회성 봉사활동 지양
- 교육공동체를 연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강화
  - 지역 봉사활동 기관과의 연계 및 학급·동아리·가족 단위 봉사활동 확대
-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근거한 자발적 실천 강조
  - ※ 무보수성, 자발성, 공익성, 비영리성, 비정파성(非政派性), 비종파성(非宗派性)  
(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)
- 학생·학부모 대상 봉사활동 홍보 및 사전 확인 강화
  - 단위 학교의 봉사활동 인정 기준 등에 대한 학생·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(※ 학기 초 충분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민원발생 사전 예방)
    - 연수, 홈페이지 게시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연중 수시 홍보
    - 학부모회,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대상 각종 회의 시 지속적 홍보
    - 봉사활동의 취지와 목적, 인정 기관 및 시간, 원칙 등 적극 안내
  -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인정기관 여부, 학교에서 사전 확인 강화
    - 봉사활동 기본방향 부합 여부, 실적 인정, 활동비 부담 봉사활동 등
    - 특히, 활동비를 내고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사전 확인 철저

## 2 | 단위 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

- 단위 학교의 「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」 수립 운영
  - 도교육청의 ‘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’에 근거하여 학교 자체 운영계획 수립·운영
    -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봉사 기관 발굴 및 연계 강화
    -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려는 각종 행사, 허위·편법 확인서 발급, 실적 부풀리기, 양도, 대리 등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관리·감독 철저

## 『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』

- 『학업성적관리지침』, 『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』, 『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』을 근거로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활동이 균형을 이루게 함
- 2024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연간 10시간 내외 계획·운영
  - ※ ‘10시간 내외’는 의무편성이 아니고 권장 사항임
  - ※ 『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』 심의를 거쳐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생 봉사활동 시수를 학교가 자율 결정
  - ※ 2024학년도 고입 반영 시수: 중학교 연간 10시간
    - 「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」 참조 (※추후 중등교육과 안내 예정)
  - ※ 지난 2024학년도 대입(졸업생 포함)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‘학교’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나,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
- 학생의 진로, 특기, 흥미와 관련된 활동이 되도록 하며, 동아리 단위 활동이 되도록 하며, 동아리 단위 활동 적극 권장
- 홍보 및 연수 계획 포함
  - 교원(연1회 이상), 학부모(연1회 이상), 학생(학기 초 및 연중 수시)
  - 가정통신문 발송(연1회 이상)
  - 봉사활동 운영계획 홈페이지 탑재(학기 초)

-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기록 기재 관리 철저히 학생봉사활동 신뢰도 제고
- 학교가 봉사활동 편성·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
  -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·운영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기록 기재 관리 철저히 학생봉사활동에 신뢰도 제고

### □ 「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」 구성 및 운영

구 성	○ 교감(위원장), 업무담당부장(부위원장), 위원(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) ※ 위원은 「학업성적관리위원회」에 준하여 구성
역 할	○ 학교 봉사활동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○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 인정여부는 「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

- ※ 단, 「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」의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은 단위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할 수 없음

## □ 교육공동체 연계 봉사활동 활성화

- 「1교 1봉사 동아리」 조직·운영
  -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1교 1개 이상의 봉사활동 동아리 지속적 운영
- 「가족봉사단」 및 「사제동행봉사단」 조직·운영
  - 세대 간 상호이해와 올바른 가치관 형성으로 상호 존중 및 새로운 가족문화 정착 유도
  -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안내와 자료 제공 등 학교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

## 3 봉사활동 인정 기준

### □ 봉사활동 인정의 기본 원칙

- 자원봉사자(학생)와 봉사활동기관(단체)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
-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, 자발성, 공익성, 비영리성, 비정파성,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- 인정시간을 실제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등의 행위 금지
- 봉사활동 수행 절차에 따라 편성·운영하고 평가 함
  -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(사전 계획서 학교장 결재 또는 담임교사 상담·지도 활동 등)에 대한 확인 강화로 내실 있는 봉사활동 추진

※ 고입 봉사활동 성적 산출은 「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」 참조

- 노인 대상 봉사활동을 학생 1인당 봉사활동 시수의 20%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

### □ 봉사활동 인정 처리 기준

-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
- 학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학교장이 확인서 발급
-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되,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

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할 수 있음(합산하여 1시간미만은 버림)

- 봉사활동의 적·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단순한 선행활동이 봉사활동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주의
- 실적 인정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 학교 「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」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실적 인정 여부 판정 (교육적인 입장에서 판단, 협의록을 결재·보관). 단, 「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」의 봉사활동 인정기준에 부합해야 함

※ 학생의 징계,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, 사회봉사,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

□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

-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

- 평일: 수업이 7교시인 경우 1시간, 6교시인 경우 2시간,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
- 휴업일(토요일,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): 8시간 이내 인정
-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 인정(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 인정)

-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

구분	출발	현장 도착	준비 및 교육	활동	식사	활동	평가	봉사 활동 후 휴식	현장 출발	도착	귀가
인정	x	x	활동인정대상시간				x	x	x	x	

-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,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
- 당해학년도(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) 봉사활동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, 다음 학년도에서 누락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입력



※ ‘증빙자료’라 함은 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 (나눔포털), VMS, Dovol 등에서 출력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말함

□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

- 교육감,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
-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(1365 자원봉사포털, VMS, DOVOL), 자원봉사센터(행정안전부), 사회복지협의회(보건복지부), 청소년 활동진흥원(여성가족부)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「2024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」에 부합하는 기관

※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 봉사활동은 반드시 담임교사와 상담하여 인정기관 및 인정 활동 여부를 필히 확인하도록 안내

○ 인정 가능 기관 분류

공공부문	행정기관, 공공기관, 공공시설
민간부문	민간기관(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)
	시설(민간이 운영하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·의료·요양, 문화, 체육 등 시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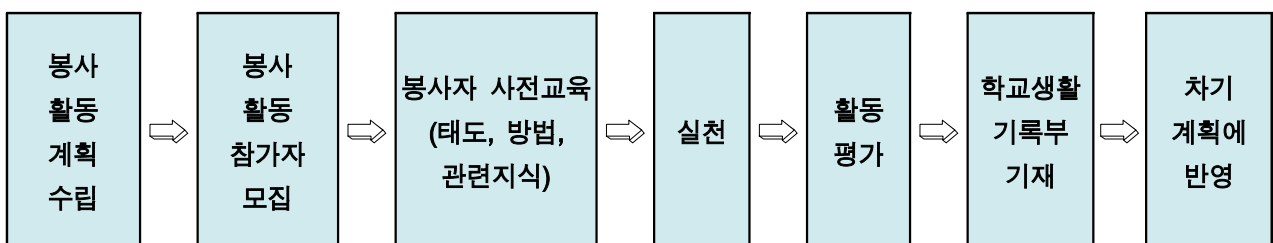
※ 인정 가능 기관이라도 내용, 영역, 안전 등에서 취지에 벗어날 경우 인정 불가

○ 인정 불가 기관

-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(단체)
- 종교적·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(단체)
-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(단체)

## 4 학생 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

□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



○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유의 사항

-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추진하며 학년, 학급, 동아리 단위로 실시
- 학년·학급 단위의 봉사활동도 ‘봉사활동실적’ 란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장 명의로 발급
- 봉사활동 계획 수립 시 일상적인 학교 대청소 등은 지양
- 학교교육과정 이외 학교 자율로 시행하는 교내 봉사활동(급식도우미, 학습지도 도우미, 다문화학생 도우미, 또래 상담 등)도 시간 인정 가능

※ 특정 학생에게 여러 종류의 활동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

※ 교내 봉사활동 대상자 모집 시 특정 동아리 소속 학생들에게만 활동 기회를 주지 않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 모집하여야 함

○ 봉사활동 수행절차(예시)

단 계	활동 내용(예시)
(1) 사전 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봉사활동에서 필요한 태도</li> <li>• 봉사활동 방법 교육 및 역할 분담</li> </ul>
(2) 현장 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봉사활동 장소 및 역할 점검</li> <li>• 봉사활동 현장의 상황과 그에 따른 활동상의 유의 사항 이해</li> <li>• 유사시 대책 수립 및 안전교육</li> </ul>
(3) 실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봉사활동의 실행 (및 필요시 진행 지도)</li> </ul>
(4) 반성 및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 및 협의</li> <li>•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</li> </ul>

※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수행절차

라. 편성·운영 - 1) 공통 지침 및 2) 영역별 지침 - 다) 봉사활동

- (1) 학생이 봉사를 실천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봉사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깨닫게 한다.
- (2)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.

○ 창의적 체험활동(봉사활동) 평가기준(예시)

기 준	평가 관점(예시)
참여도	• 활동에 대한 참석 정도, 실천의 지속성 등
협력도	• 집단 활동에의 기여 정도, 실천 활동에 대한 협동성, 협력의 지속성 등
열성도	•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, 활동에 대한 책임감, 적극성, 자기 주도성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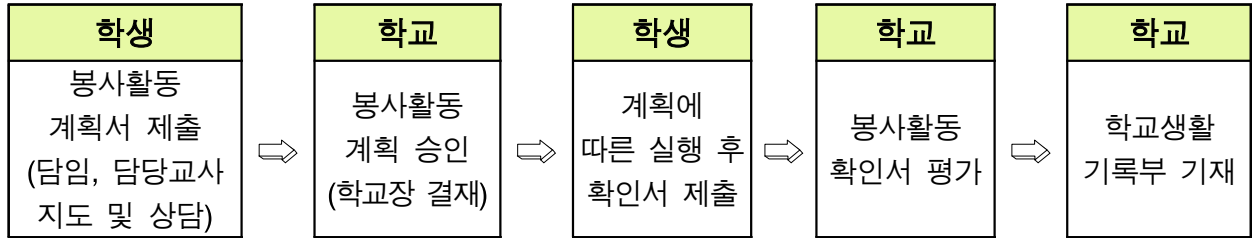
※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

마. 교수·학습 및 평가의 방향 - 2) 평가 - 가) 학생 평가 - (2) 평가 관점과 평정 척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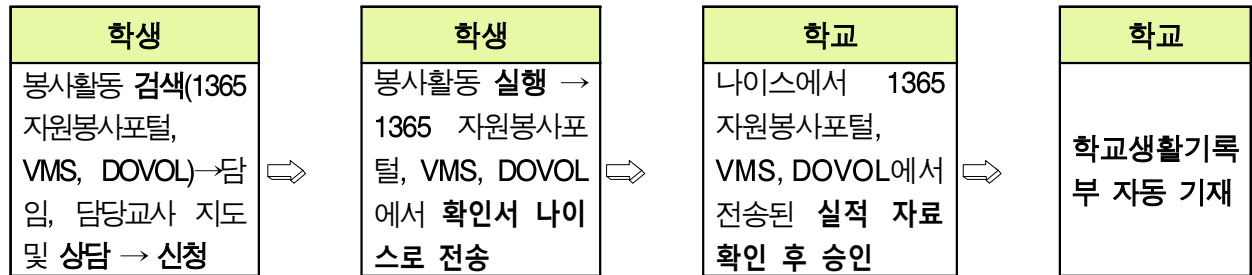
- (나)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로 평가 관점을 마련하고 참여도, 협력도,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, 활용한다.

□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

- 1365 자원봉사포털, VMS,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: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(허가)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



- 1365 자원봉사포털, VMS, DOVOL을 이용하는 경우: 실시 전 반드시 사전 상담 필요 ※ 실적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전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·학부모에게 안내(코로나19 대응 상황의 경우)



- 1365 자원봉사포털 ⇔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, 1365 자원 봉사포털 ⇔ DOVOL 실적 자동 공유(자료 전송 불필요)

- 실적 연계 사이트(1365 자원봉사포털, VMS, DOVOL) 이용 관련 유의사항

- 「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」에 적용되는 봉사활동 분야(프로그램 내용 등)를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,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실시
-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 실적 반영 시 다음 내용을 반드시 제외한 후 반영
  - 1365 자원봉사포털, VMS, DOVOL 실적 연계한 경우라도 경북 교육청의 『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』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 실적 - 사전 상담 필수

-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와 영리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
- 1일 8시간(수업시간과 봉사활동 시간 합산) 초과 시간
- 물품재료구입비 납부 후 제작하고 기부하는 활동, 활동비나 후원금을 내고 참여하는 활동, 단순 체험관람 프로그램 등의 활동
- 8시간(수업시간과 봉사활동 시간 합산) 초과 시간
- 허위 봉사활동 실적
- 학생, 학부모 중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 탑재된 봉사활동은 무조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 지도 필요

#### □ 학생봉사활동 평가

-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실시
  -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천 태도 함양 모색
  - 체크리스트, 소감문, 발표, 토의 등을 통해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과 협의 실시
  -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

## 5 | 봉사활동 지원 체계 구축

#### □ 봉사활동 지역협의체 구축·운영

- 학생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(교육지원청-자원봉사센터-사회복지협의회) 협력체제 구축·운영
-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, 가족 단위 봉사활동, 사제동행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 프로그램 발굴·개발·운영